

# Korean Tax Update

May 2021, Issue 83

## [조세뉴스]

---

### 「K-반도체 전략」 중 세제지원 내용 (기획재정부) [전문보기]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동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관련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임.

###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5월 31일까지 (국세청) [전문보기]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2020년에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납세자는 5. 31.(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함. 참고로, 올해 신고안내대상 인원은 5만5천 명(부동산 2만 명, 국내주식 2천 명, 국외주식 2만6천 명, 파생상품 7천 명)으로 전년 안내대상(3만7천 명)에 비해 49% 증가하였음.

## [판례]

---

###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장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 두 56223 판결(심리불속행)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외국 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 ①, ②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함. 먼저 ①의 요건

관련, 구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 '소득'에 관한 규정을 둔 다음,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소득과 결손금을 엄밀하게 구별하고 있으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음수로 되는 경우는 '결손금'에 해당할 뿐이고 과세의 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음으로 ②의 요건 관련, 설령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상 베트남에 원천을 둔 소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을 베트남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정해진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요컨대 이 사건 외국인계약자세액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정해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 278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7 조 제 6 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 두 63439 판결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 본문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등 재산 양도에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그런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임.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20%를 가산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함.

[심판례]

**건축물 증축공사 중 설치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한 브릿지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증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조심 2020 지 1432, 2021. 4. 12.

- “취득가격”에는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1995누4155)인 바, 쟁점공사비는 청구법인이 제2동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제1동 건축물과 상층부를 연결하는 종전브릿지를 설치하다가 측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철거한 것으로 제2동 건축물의 효용을 증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종전브릿지 설치 관련 공사비용 등 쟁점공사비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등 순수공사원가만 포함되어 있는데 신축브릿지 설치 관련 공사비용에도 재료비 및 노무비 등 순수공사원가가 중복되어 지출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현실적인 퇴직(연봉제 전환)시 근속연수에서 해당 중간정산 대상기간(쟁점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 한도를 재계산하여 그 감액된 금액만큼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0 중 8018, 2021. 4. 14.

- 퇴직금 중간정산금(쟁점금액)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쟁점금액 지급 당시의 청구법인 정관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쳤다는 증빙이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로 지급된 것도 아님을 감안하면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임의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경정(그 상당액의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의 익금산입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유출자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재계산 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는 쟁점퇴직금의 지급 시 그 상당액 및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퇴직금으로 보아 쟁점기간을 제외하고 쟁점퇴직금의 퇴직금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한도초과액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가 포함된 경우, 내진성능 확보와  
관련없는 공사비용까지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조심 2020 지 0540, 2021. 4. 15.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이 대수선을 통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부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정의 신설 취지가 「건축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을 통해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확대시키기 위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등의 감면범위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소요된 공사비용만으로 한정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전 1504, 2021. 4. 21.

- 청구법인은 회생채권액은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회생채권액에 갈음하여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대로 소각되어 회생불능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쟁점매입처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고 볼 경우 쟁점매입처는 해당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출자전환을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의 공제까지 받게 되어 조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액은 회수불능채권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는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가 회생채권액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 공제분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4 조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 지 0437, 2021. 4. 21.

-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종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재개발사업에 포함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인 재개발사업에는 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의 취득

세 감면대상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외하는 것은 법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인 바(조심 2019지1668),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예규]

### 비영리법인이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서면-2020-법인-3408, 2021. 3. 3.

-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였으나 그 부지 일부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라도, 전체 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이면 감면세액 추징이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626, 2021. 3. 12.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 1295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8 조 제 4 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가, 단일 필지의 공장용지로서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하나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는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비록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공장용도 기준면적 이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3 년)이 지난 이후인 당해 과세관청의 현장 조사일 당시까지 수풀이 우거져 있는 등 나대지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직접사용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됨.

###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0, 2021. 5. 7.

-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관계기업제도 시행에 따라 중견기업이 된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개정(2015.6.30.)되어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으나, 평균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4 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중 일부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 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범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2021. 5. 11.

-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4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 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20 조 또는 제 21 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에게 선박용 탱크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서면-2021-국제세원-1348, 2021. 5. 13.

- 선박용 탱크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탱크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 12 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은 「법인세법」 제 98 조의 7 에 따라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 12 조에 따른 세율(10%, 주민세 포함)이 적용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mailto:kr-fmtaxtcoe@kr.kpmg.com)